

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	관련
번호	343

제안년월일 : 2019년 3월 7일

제안자 : 운영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조문의 오류가 있는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일부 체계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임.

2. 수정의 주요내용

- ‘영상자료를 제공받은 자’ 를 ‘제1항에 따라 영상자료를 제공받은 자’ 로 수정함(안 제49조의3 제2항).

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해당 없음.
- 예산조치 : 해당 없음.
- 기타사항 : 해당 없음.

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9조의3 제2항 중 “영상자료를 제공받은 자” 를 “제1항에 따라 영상자료를 제공받은 자” 로 한다.

수정안조문대비표

원 안	수정안
<p>제49조의3(영상자료의 제공) ① 의장은 제49조의2제1항에 규정된 회의 중계 영상자료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. 이 경우, 의장은 영상자료의 제작·편집 및 제공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.</p> <p>② <u>영상자료를 제공받은 자</u>는 해당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.</p>	<p>제49조의3(영상자료의 제공) ① 의장은 제49조의2제1항에 규정된 회의 중계 영상자료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. 이 경우, 의장은 영상자료의 제작·편집 및 제공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.</p> <p>② <u>제1항에 따라 영상자료를 제공받은 자</u>는 해당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.</p>

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.

제49조의3(영상자료의 제공) ① 의장은 제49조의2제1항에 규정된 회의 중계 영상자료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. 이 경우, 의장은 영상자료의 제작·편집 및 제공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영상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신 설></p>	<p>제49조의3(영상자료의 제공) ① <u>의장은 제49조의2제1항에 규정된 회의 중계 영상자료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. 이 경우, 의장은 영상자료의 제작·편집 및 제공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.</u></p> <p>② <u>제1항에 따라 영상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.</u></p>